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0

발의연월일: 2020. 7. 3.

발 의 자: 송갑석 · 정춘숙 · 김경만

이용선 · 이개호 · 임종성

박 정ㆍ이장섭ㆍ안민석

인재근 · 조오섭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벤처캐피탈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고 있음.

벤처캐피탈 중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 pital)은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기위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 행하는데, 구글의 구글벤처스, 인텔의 인텔캐피탈, 바이두의 바이두벤처스 등이 글로벌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로서, 미국에서는 전체 벤처투자의 50%, 일본은 44%가 CVC를 통해 달성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현행법의 규제로 인해 CVC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허용하고, 이들 CVC의 투자기업에 대해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의 지분보유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목적의 벤처캐피탈을 허용하고 창업기업 자금조달 형태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9조제3항).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5호 본문 중 "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를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로, "一般持株會社"를 "일반지주회사"로,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영위하는 업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금융업이나"를 각각 "금융업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손자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

3. 증손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의2제2항제5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5항제3호 중"「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20년 8월 11일까지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8條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	第8條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
한 등) ① (생 략)	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持株會社는 다음 각 호의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
(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	<u>일</u> 반지주회사
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	금융업 또는 보험
業을 영위하는 國內會社의 株	업(「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式을 所有하는 행위. 다만, 일	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
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	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
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	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
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업자가 영위하는 업은 금융업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또는 보험업으로 보지 아니한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u>소유</u>
있다.	

3	일반	지주회	회사의	자호]시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게	해
당하	는	행위를	하여	서는	0	-니
된다	. < प्	난서 신]설>			

- 1. 2. (생략)
-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글 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③
_ 디마 이바기즈하시이 기치시
<u>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u>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금융업 또는
3. 금융업 또는
3. <u>금융업 또는</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u><신 설></u>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손자회 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 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신 설>

⑥·⑦ (생 략)

-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①・② 第 (생 략)
 -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하는 會社로서 「벤처투자 촉 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中小

1. ~ 4. (현행과 같음)
5. 손자회사가 「벤처투자 촉진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
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
⑤
1.•2. (현행과 같음)
3. 증손회사가 「벤처투자 촉진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
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
⑥·⑦ (현행과 같음)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①・②
(현행과 같음)
<u><</u> 삭 제>

企業創業投資會社는 國內 系列 會社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 여서는 아니된다.